

## 입양정보 공개청구서

\*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5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청구인 (입양 아동)	성명	한글	연락처	전화번호
		영문		팩스번호
	전자우편주소			
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·여권번호)				
주소(거주지)				

청구 구분	[ ] 친생부모 인적사항 제외 공개	[ ] 친생부모 인적사항 포함 공개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청구 내용	입양 배경	[ ]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, 입양일 및 입양에 동의한 이유, 친생부모의 거주 지역명(시·군·구의 명칭)		
	출생 및 보호 관련 정보	[ ] 입양된 사람의 입양 전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[ ] 입양된 사람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보장시설 및 입양기관의 명칭, 주소 및 연락처		
	친생부모 인적사항 ※ ‘친생부모 인적사항 포함 공개’를 선택한 경우만 표시	[ ] 친생모	[ ] 이름	[ ] 생년월일
		[ ] 친생부	[ ] 주소	[ ] 연락처
*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더라도 친생부모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거나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으로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음				

공개 방법	[ ] 열람	[ ] 사본·출력물	[ ] 전자파일	[ ] 기타
----------	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

수령 방법	[ ] 직접 방문	[ ] 우편	[ ] 팩스 전송	[ ] 정보통신망(전자우편 송부 등)
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 제3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(입양아동)

(서명 또는 인)

###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 귀하

제출 서류	1.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	수수료
	2.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입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(제1호의 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정보를 통하여 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)	
	3.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 제33조 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없음

